

사용자단체 노무관리 지도업무 전담경력증명서

신청인	성명(한글)	(한자)	주민등록번호
	주소		
사용자 단체	단체명	전화번호	
	소재지	대표자	
	채용 연월일	퇴직 연월일	
노무관리 지도업무 전담경력	기간	직위	전담 업무
	. . .~ . . .(.년 .개월)		
	. . .~ . . .(.년 .개월)		
	. . .~ . . .(.년 .개월)		
	. . .~ . . .(.년 .개월)		
	. . .~ . . .(.년 .개월)		
	계	.년 .개월	

「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」 제3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근무경력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.년 .월 .일

신청인

(인)

(사용자단체) 대표 귀하

제 호

위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합니다.

.년 .월 .일

(사용자단체) 대표 인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없음
담당 직원 확인사항	1.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2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.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([]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, []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[]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)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본인
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- "노무관리 지도업무 전담경력"이란 회원업체의 노무관리 지도업무만을 전담한 경력을 말합니다.
- 이 증명서는 공인노무사 자격 제1차시험의 일부 과목 면제 근거서류가 되므로 거짓 증명서인 경우 본인의 합격이 취소됨은 물론 증명서 발급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.